

『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2월 25일

나. 발 의 자 : 이선우, 권재욱, 김춘남, 김택호, 송용자
신문식, 이지연 의원(7명)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3월 7일

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이 선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
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
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의원연구단체의 구성(안 제3조)
 - 구성인원 : 5명 이상
 - 2개 단체까지 중복 가입 가능 (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 불가)

-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4조)
 -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기능 수행
-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(안 제7조 및 제9조, 안 제11조)
 - 연간 3개 이내의 단체로 제한
 - 활동기간은 등록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함
 - 당해연도 12월 15일 전까지 결과보고서 제출
- 연구단체의 지원(안 제12조)
 -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범위 내
 -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(각 연구단체별 300만원 이내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상 호

- 본 「구미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은
 -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례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(지방의회의 의무 등)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여 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